

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관련법령 및 행정처리절차 안내



부산지방항공청

Busan Regional Office of Aviation

# 순서

I. 관련법령 안내

II.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행정처리 절차



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법령

# 항공법 상 인력활공기의 정의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2조

#### ▶ 정의

- 28. "초경량비행장치"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, 인력활공기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



### 시행규칙 제14조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

- 2. 인력활공기: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

# 항공법 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정의

1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 항공법 제2조

### 정의

● 43의2. "항공레저스포츠사업"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항공기(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),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,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

나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(貸與)해주는 서비스

- 1)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
- 2) 경량항공기
- 3) 초경량비행장치

다.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,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

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

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 항공법 제23조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등

-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, 용도, 소유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

## 시행규칙 제65조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·관리

- 소유자는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
  1.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2.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
  3.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센티미터 ×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)

#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

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 항공법 제23조의 2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

-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(정비·개조·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)한 경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.

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40조의 2



#### 항공레저스포츠사업

-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
-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6.22.>
  1.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2. 인구밀집지역, 사생활 침해, 교통,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3.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
### 시행규칙 제312조



#### 등록사항의 변경

-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
  1. 자본금의 변경
  2.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
  3. 대표자 변경,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
  4. 사업 범위의 변경(조종교육, 대여, 정비 수리 개조)
  5. 상호의 변경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구분	기준
자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: 3천만 원 이상</li> <li>- 개인: 4천5백만 원 이상</li> </ul>
항공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</li> </ul>
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</li> <li>-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1명 이상</li> </ul>
시설 및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근 항공교통업무기관(군 비행장을 포함한다)과 연락할 수 있는 유·무선 통신장비를 갖추는 것</li> </ul>
보험 (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 기간 :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 대상 :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,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 금액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(1인당 1억 5천 배상) 이상</li> </ul>

# 보험 및 공제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23조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등

-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## 시행규칙 제66조의3

#### ▶ 보험가입

-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,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.

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) 제3조(책임보험금 등) ① 보험금 또는 공제금(이하 "책임보험금"이라 한다)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

1.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\*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

# 사업계획 변경 신고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42조, 120조

#### ▶ 사업계획서 수록 사항

##### ● 가. 자본금

다.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

마. 사용시설·설비,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

바. 종사자 인력의 개요

아.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

자. 탑승료·대여료 등 이용요금

차.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(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, 안전 수칙·교육·점검계획,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, 탑승자 기록관리, 기상상태 현황 등)

# 기타 금지 및 신고 사항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42조에 의한 준용

- ▶ 면허대여 등의 금지 (제123조)
- ▶ 사업의 양도, 양수 (제124조)
- ▶ 사업의 합병 (제125조)
- ▶ 상속 (제126조)
- ▶ 휴업, 휴지 (제127조)
- ▶ 폐업, 폐지 (제128조)

#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

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 항공법 제23조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등

-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.

## 시행규칙 제66조의2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

-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

- 동력패러글라이더

-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(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)

\*기타)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유인자유기구,

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
가.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 
나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
#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

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 항공법 제23조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등

-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·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

## 시행규칙 제66조의2

### ▶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

-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

- 동력패러글라이더

-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(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)

\*기타)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기구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),

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
가.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 
나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
# 벌칙 및 과태료

## 항공법 제23조의 3

#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

1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
3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
4. 제23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5.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



# 벌칙 및 과태료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72조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

-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,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\*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목적 외 사용 및 보험 미가입 시

# 벌칙 및 과태료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74조



####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

- ② 제14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
- ③ 제123조(제14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면허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# 벌칙 및 과태료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82조

#### ▶ 과태료(500만 원 이하)

- 1.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
- 2.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한 자

### 항공법 제182조의 2

#### ▶ 과태료(300만 원 이하)

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

# 벌칙 및 과태료

## I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 항공법 제183조

#### ▶ 과태료(200만 원 이하)

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

### 항공법 제183조의 4

#### ▶ 과태료(30만 원 이하)

- 1. 초경량비행장치사고\*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
- 2.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, 이전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\* 사람의 사망·중상 또는 행방불명, 추락·충돌 또는 화재 발생, 위치확인 또는 접근 불가

# 벌칙 및 과태료

## 시행규칙 제68조

### 1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

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
2.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·통제공역·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  
다만,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
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5.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
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
7. 주류,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8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
# 벌칙 및 과태료

## 시행규칙 제68조

### 1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법령

#### ▶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

-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
  2.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
  3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
  4.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)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



## II.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행정처리 절차

---

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

## II. 행정처리 절차

접수번호	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		처리기간
※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·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말소		7일
비행장치	① 종류		② 신고번호
	③ 형식		④ 용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영리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
	⑤ 제작자		
	⑥ 제작번호		⑦ 제작연월일
	⑧ 보관처		
소유자	⑨ 성명·명칭		
	⑩ 주소		
	⑪ 생년월일		⑫ 전화번호
변경·이전 사항	⑬ 변경·이전 전	⑭ 변경·이전 후	
말소 사유			
「항공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5조제5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소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·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말소 을(를) 신고합니다.			
2015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신고인      (서명 또는 인)			
지방항공청장 귀하			
※ 구비서류(이전·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, 말소 시에는 제외한다.) 1.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 2. 삭제 <2013.2.15> 3.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. 4.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cm × 세로 10cm의 측면사진)을 첨부합니다. 5.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합니다.			
작성 시 유의사항: ※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.			

● 패러글라이더를 영리목적으로 사용 시

●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 
부산지방항공청으로 신고

\* '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(braa.molit.go.kr)

- 알림마당 - 초경량사업 등록현황' 에 게시



#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 신고

## II. 행정처리 절차

접수번호	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		처리기간
※	■ 신규 □ 변경·이전 □ 말소		7일
비행장치	① 종류	② 신고번호	
	③ 형식	④ 용도	■ 영리 □ 비영리
	⑤ 제작자	⑦ 제작연월일	
	⑥ 제작번호		
	⑧ 보관처		
소유자	⑨ 성명·명칭		
	⑩ 주소		
	⑪ 생년월일	⑫ 전화번호	
변경·이전 사항	⑬ 변경·이전 전	⑭ 변경·이전 후	
말소 사유			
<p>「항공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(제65조제5항)에 따라</p> <p>초경량비행장치의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·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말소 을(를) 신고합니다.</p>			
<p>2015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고인 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지방항공청장 귀하</p>			
<p>※ 구비서류(이전·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, 말소 시에는 제외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</li> <li>삭제 &lt;2013.2.15&gt;</li> <li>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.</li> <li>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cm × 세로 10cm의 측면사진)을 첨부합니다.</li> <li>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합니다.</li> </ol> <p>작성 시 유의사항: ※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.</p>			

● 소유권 이전 시

● 종류, 용도, 소유자 성명 등 변경 시

● 장치 멸실, 해체, 비영리 전환 시

\* '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(braa.molit.go.kr)

- 알림마당 - 초경량사업 등록현황' 에 게시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

## II. 행정처리 절차

■ 항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6호서식] <개정 2014.7.18> ↓

항공기취급업 ↓  
 항공기정비업 ↓  
 항공기대여업 ↓  
 항공레저스포츠사업 ↓  
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↓

**등록신청서** ↓

(양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성명(대표자)
	주소(소재지)	생년월일
	(전화번호)	
지분율		
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		
임원의 명단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37조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37조의2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40조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40조의2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41조 ↓	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4조, 제911조, 제911조의2, 제919조에 따라 ↓
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취급업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정비업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대여업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레저스포츠사업 ↓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↓	등록을 신청합니다. ↓	
	년	월 일
	신청인	
	(서명 또는 인)	
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 ↓		
첨부서류	1. 해당 신청이 「항공법」 제137조제2항, 제137조의2제2항, 제140조,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 ↓ 2. 사업계획서 ↓ 3. 타인의 부종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종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↓	수수료 ↓ 「항공법 시행규칙」 제928조 ↓ - 1만 원 상당 금액 수입인지 ↓
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	1. 부종신 등기사항증명서 ↓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함) ↓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자·합용종)]

-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영리활동 전
  -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시작 전 등록
- (체험 경관조망, 조종교육, 대여, 정비 수리 개조)
-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

\* '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(braa.molit.go.kr)

- 알림마당 - 초경량사업 등록현황' 에 게시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

## II. 행정처리 절차

- 소형항공운송사업
- 항공기사용사업
- 항공기취급업
- 항공기정비업
- 항공기대여업
- 항공레저스포츠사업
-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

### 등록사항 변경신청서

(양식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 주소(소재지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전화번호)
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			
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			
변경사유			
<p>「항공법」 제192조, 제194조, 제197조, 제197조의2, 제140조, 제140조의2,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0조, 제304조의2, 제312조 및 제318조에 따라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항공운송사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사용사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취급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정비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대여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</p> <p>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</p>			
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		신청인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구분	변경사유	합부서류	수수료 임금
	1. 자본금의 변경 2.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. 대표자 변경,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. 사업 범위의 변경 5. 상호의 변경	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.	
지반항공안전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
### ● 사업소 신설 또는 변경

### ● 대표자 변경

### ● 사업 범위의 변경

(체험 경관조망, 조종교육, 대여, 정비 수리 개조)

### ● 상호의 변경

### ● 자본금의 변경

\* '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(braa.molit.go.kr)

- 알림마당 - 초경량사업 등록현황' 에 게시

#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업계획 변경

## II. 행정처리 절차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항공레저스포츠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		처리기간
사업계획 변경 신고서		7일
신청인	① 성명(명칭) (등록번호: 제부 - 호)	② 생년월일
	③ 주소 (전화번호: )	
④ 변경예정일		
⑤ 변경사유		
「항공법」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20조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32조제3항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142조제4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42조제5항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289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02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14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		
년 월 일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		
※ 구비서류: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.		수수료
		없음

● 사용장비, 시설, 설비 변경 시

● 종사자 변경 시

●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변경 시 등

\* '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(braa.molit.go.kr)

- 알림마당 - 초경량사업 등록현황' 에 게시